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2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3월 26일)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송 요 출)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11조)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안 제12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규모는 15억 8천만원임.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2007.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안 제5조제5항)
-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 (안 제6조제3항)
- 구의장 추천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개정 (안 제6조제4항)
- 위원회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개정 (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시 구의회 의결사항 신설
(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06.11. 7 ~ 2006. 11. 28(20일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영등포구거주노인”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중 “각 호의 1”을 “각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제1항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항중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자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7조(위원회 기능)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제1항중 “출납폐쇄후”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

제5조의 제목,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2조제1항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u>영등포구거주노인</u>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노인</u> ----- -----</p>
<p>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u>각호의 1</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 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u> 2. <u>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u> 3. 기타 수입금 	<p>제3조(기금의 재원) ----- <u>각호</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u> ----- 2. <u>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u> 3. (현행과 같음)
<p>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략) <p>②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u>각호</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생략)</p> <p>① ~ ④ (생략)</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현행과 같음)</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⑤<u>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u></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u>운영 관리</u>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위원장은 <u>부구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주민생활지원국장</u>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u>사회복지과장</u> 2.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u> 	<p>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관리·운영</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u>주민생활지원국장</u> -----, ----- <u>사회복지과장</u> -----. ④----- ----- 1.----- <u>주민생활지원과장</u> 2. <u>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u>

신 · 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3.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u>당해 분 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u></p> <p>⑤ ~ ⑥ (생략)</p> <p>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u>운영관리</u> 에 관한 다음 <u>각호의 1</u>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영계획안</u></p> <p>2. <u>기금결산보고서안</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u> <u>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p> <p>① ~ ② (생략)</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2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 적인 <u>운영관리</u>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p> <p>②기금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u>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u>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3. ----- ----- <u>구청장이 위촉하는 자</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 기능) ----- <u>관리·운영</u> ----- <u>각호</u> -----.</p> <p>1. <u>기금운영계획의 수립</u></p> <p>2. <u>기금운영성과분석</u></p> <p>3.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u></p> <p>4. <u>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u></p> <p>5.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u> <u>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④ <u>구청장은 기금운영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2조(회계공무원) ①----- ----- <u>관리·운영</u> ----- -----.</p> <p>② ----- -----<u>노인복지담당주사</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u>출납폐쇄후</u>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 1.~ 3.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3조(기금의 결산) ①----- <u>매 회계연도</u> <u>출납폐쇄 후</u> ----- -----.</p> <p>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p> <p>4. <u>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 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 보고서</u></p>